

農業租稅 및 補助政策과 所得再分配

朱 鶴 中

.....▷ 目 次 ◁.....

- I. 序 言
- II. 分析方法의 理論的 設定
- III. 租稅 및 補助金의 規模와 利用資料
- IV. 再分配效果의 分析
- V. 狀況設定에 따른 政策代案의 檢證
- M. 要約 및 政策的 結論

.....

I. 序 言

經濟政策의 基本目標의 하나로서 衡平이 부
각됨에 따라 近代國家에 있어서 財政收支의
衡平造成的 機能이 有力한 政策手段으로 注目
되고 있다. 强制性을 띠는 國家財政收支는 한
經濟單位의 주어진 所得에 直接稅와 移轉支出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이 論文은 筆者가
編하여 近刊豫定인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
(上卷)에 收錄될 朱鶴中·韓成德의 「農業租稅 및
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를 要約한 것이다. 그
러므로 이 論文의 보다 자세한 內容에 대하여는
同報向書를 참조하기 바란다.]

1) 朱鶴中, 「所得分配研究에 있어서 所得의 概念과 決定
要因」,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卷), 1979, pp.32~37 참조.

로서 加減項目으로 작용하여 可處分所得을 決
定할 뿐 아니라, 間接稅의 歸着과 財政支出로
서 產出된 公共財와 「서비스」의 귀속은 各階
層의 「生活所得」에 영향을 미친다¹⁾. 이러한
財政收支의 所得再分配機能을 農業部門에 適
用하여 그 所得再分配效果를 검증하고, 農業
租稅 및 補助金政策의 代案을 檢討함으로써
財政赤字要因으로서 論難의 대상이 되고 있는
農業補助金의 政策的 妥當性을 吟味하려는 것
이 本論文의 目的이다.

이와 같은 研究目的과 관련하여 提起되는
몇가지 문제는, 첫째 農業租稅와 補助金이 都
·農間 可處分所得隔差의 緩和와, 둘째 農家
間의 所得再分配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세째 租稅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農業部門
自體內에서 租稅衡平의 原則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農業補助金을 위한 財政赤字를 얼
마나 補填할 가능성이 있으며, 끝으로 같은
규모의 補助金으로써 어떤 種類의 補助金을
어떻게 配定하는 것이 所得再分配效果가 가장
클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問題

提起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먼저 理論的 分析構圖를 設定하였고 農家所得 및 可處分所得에 대한 租稅 및 補助金の 再分配效果를 分析하였다. 그리고 農業補助金에서 基因하는 財政赤字를 租稅衡平의 原則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自體調達할 수 있는 限界와 農業租稅와 補助金政策의 改善方案은 農業稅率과 收買方法의 變更이라는 狀況設定(simulation)으로써 檢證을 시도한 후 政策代案을 提示하였다. 分析에 이용된 資料는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1974~77年間의 4年이나 政策課題研究가 지니는 중요한 時事性에 비추어 이 기간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또한 여기에서 農業租稅는 地方稅로서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農地稅이며, 農業補助金은 糧穀 및 肥料의 兩大特別計定에서 발생하는 赤字를 의미한다.

II. 分析方法的 理論的 設定

여기서 分析對象으로 하는 農業租稅는 直接稅와 公課金으로서 그 大宗이 農地稅이며²⁾, 補助金은 農業協同組合을 통한 米麥과 肥料의 操作에 따르는 赤字를 그 對象으로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試圖된 分析에는 租稅의 轉嫁와 歸屬研究(incidence studies)와 같이 많은 假定의 導入과 假定에 의한 結論의 誘導를 피

할 수 있었다³⁾. 直接稅와 補助金은 課稅以前所得(income before taxes)에 加減되어 可處分所得을 결정함으로써 經濟單位의 所得分配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하면 階層別所得(Y_i)은 直接稅(T_i)의 控除와 補助金(S_i)의 加算으로 可處分所得(Y_i')을 결정하며, 所得의 不平等指數를 「지니」係數(Gini coefficient)로 나타낼 때 Y_i 의 分布에 따른 「지니」係數(g)와 Y_i' 의 分布에 의한 「지니」係數(g')間에 差異가 生길 수 있다. 즉, g 와 g' 間의 關係는 3가지로 分類할 수 있는 바,

- ① $g > g'$ 이면 租稅와 補助金은 兩者의 複合作用이 衡平造成的이라 할 수 있고,
- ② $g = g'$ 이면 中立的으로 租稅와 補助金이 比例的이거나 平衡된 두가지가 相殺한 것이고,
- ③ $g < g'$ 이면 衡平沮害的으로 租稅와 補助金の 純效果(net effect)가 上厚下薄한 경우이다.

租稅와 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를 나타내기 위하여 所得再分配指數(I_r)는,

$$I_r = \frac{g - g'}{g} \times 100$$

과 같이 定義되고 ①의 경우는 $I_r > 0$, ②의 경우는 $I_r = 0$, ③의 경우는 $I_r < 0$ 이다. 따라서 租稅와 補助金이 部門內의 所得再分配機能을 다한다고 判別되려면 所得再分配指數가 正의 數值로 나타나야 하며 그 數值가 크면 클수록 더욱 有意하다고 해석된다.

이 分析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要素는 農業補助金으로서 農家所得에 미치는 影響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農產物價格政策으로 指稱되는 農業補助金은 先進國의 경우와는 달리 農產物價格의 격심한 季

2)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에 의하여 推定한 結果, 分析對象年度에 있어서 農家租稅總額의 87~92%를 農地稅가 說明하고 있다.

3) Luc De Wulf,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s*, Vol. XXII, No. 1, March 1975, pp. 61~131; Peter S. Heller, *The Incidence of Taxes in Korea*,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October 1978. (mimeographed)

節的變動을 방지하고 높은 收買價格을 保障함으로써 生産과 農家所得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農業補助金, 또는 農產物價格의 政策의效果가 주효하다면 價格의 所得效果는 물론 增産에 의한 所得效果와 農業所得增大에 따르는 農地價格上昇에 의한 資本利得을 예상할 수 있으며⁴⁾ 이 세가지가 所得分配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 될 수 있다. 農地價格上昇에 의한 資本利得은 農地の 賣却과 더불어 實現되고 傳統的 國民所得概念에서 제외되는 所得이기 때문에 利用資料의 所得概念과 一貫性있게 다루기 위하여 여기서는 分析의 對象에서 제외하였다. 農產物價格支持政策의 增産效果는 다소 예상할 수 있으나 現行制度가 豫示價格制度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長期趨勢로 나타나는 食糧增産이 순전히 農產物價格政策의 소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肥料, 農藥 등 中間投入物量의 增大, 灌溉施設의 改善, 氣候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⁵⁾. 그러므로 農產物價格政策에 유인된 食糧增産에 의한 所得效果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分析하지 아니하고 農業補助金의 直接的인 短期的 所得再分配效果만을 分析의 對象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農產物에 대한 單位當 補助金은 收買價格(P_p)과 放出價格(P_s)의 差異으로써 규정되며 前者가 後者보다 높음으로써 農業補助金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 補助金이 生産者인 農家に 대한 補助金인가, 消費者인 非農家に 대한 補助金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糾明하

기 위하여 市場均衡價格(P_e)에 대한 假定이 필요하다. 여기서 市場均衡價格이란 原論의 定義 그대로 市場에서 결정되는 古典의 自由競爭價格이다.

이러한 세가지 價格間에는 세가지 형태의 관계, 즉 ① $P_p = P_e > P_s$, ② $P_p > P_e > P_s$, ③ $P_p > P_e = P_s$ 이 成立하며 이에 따라 補助金의 歸屬이 달라진다. ①의 경우 農業補助金은 전적으로 消費者인 非農家に 귀속되며 農家에 대한 補助金의 효과는 短期的인 季節的 價格變動에 의한 振幅의 緩和 또는 解消를 통한 消極的인 所得增進效果에 불과하다. 이와 정반대되는 경우는 ③의 價格關係로서 補助金의 惠澤이 農家に 전적으로 歸屬된다. ②의 경우는 消費者와 生産者에게 補助金이 각각 消費者歸屬分($S_n = P_e - P_s$)과 生産者歸屬分($S_a = P_p - P_e$)으로 兩分된다.

이상과 같이 理論的으로는 農業補助金의 直接的 歸屬이 세가지 價格의 相關關係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農產物의 均衡價格을 規定하기가 불가능하므로 農業補助金의 歸屬을 결정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또한 糧穀의 收買·操作에 의한 價格安定效果와 이에 따른 所得增大效果도 收買價格과 年中平均價格(\bar{P})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 $P_p > \bar{P}$ 이면 農家所得에 그 차이만큼 기여하는 것이 되고, $P_p < \bar{P}$ 이 그 반대의 결과로서 非農家の 實質所得增大을 招來한다. 그러나 農業補助金이 成立하는 한, 어떤 경우라도 價格安定效果에 따른 農家間所得分配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小規模農家일수록 農產物의 季節的 價格變動의 逆勢에 영향을 받는 반면 大規模農家は 賣出時期를 선택할 여지를 가짐으로써 農家所得의

4) Charles L. Schultze, *The Distribution of Farm Subsidies: Who Gets the Benefits?*,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1, p.4.

5) 潘性統, 『韓國農業의 成長』, 韋文閣, 1974, pp.103~104.

相對的 增大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農產物價格政策이 農家所得의 흐름의 增大에 따라 均衡價格 이상의 補助金所得의 資本價値(capitalized value)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農地價格이 變化하고 富의 分布에 영향을 미치며 農地賣買에 따른 資本利得의 발생까지도 農業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로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시도하는 分析이 政策的 短期課題이며 이러한 여러 要因을 충분히 감안하여 所得分配 및 再分配效果를 評價할 수 있는 分析的 技法이나 均衡價格을 推定할 수 있는 方法이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要因을 포괄한 分析을 試圖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業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의 上限을 드러내기 위하여 農業補助金이 農家に 全額 歸屬되는 ③의 경우를 가정하여 分析을 시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上限分析에는 農產物價格安定과 農地價格上昇에 따라 예상되는 衡平造成的인 所得再分配效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 上限分析은 보다 現實的 妥當性이 있는 ②의 경우와 이러한 效果를 감안한 分析結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Ⅲ. 租稅 및 補助金の 規模와 利用資料

1. 農業租稅와 農地稅

農業部門의 直接稅로서 農地稅는 田畝단을 課稅客體로 하여 여기에서 派生하는 收入과 所得이 課稅對象이 되며, 農地에서 生産되는 作物의 種類에 따라 甲類와 乙類로 구분하여 課稅된다⁶⁾. 課稅方法은, 甲類의 경우 農地等級別 基準收穫量等級表⁷⁾에 나타난 基準收穫量에 糧穀管理法施行令 제10조의 粗穀 2等品價格을 곱하여 결정한 基準收入額에서 基礎控除額⁸⁾을 差減하고 地方稅法 第213條의 農地稅率⁹⁾을 適用하여 甲類農地稅를 부과하며, 乙類의 경우는 乙類農地에서 派生한 總收入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所得에서 乙類農地에 해당하는 前記한 기초공제액과 農地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賦課한다. 이러한 農地稅 課稅方法을 볼 때 農地稅는 地方稅이나 農業所得稅의 性格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課稅方法에 의하여 徵收되고 農地稅法이 地方稅로 改正되었던 1961年 이후의 農地稅徵收推移와 이를 租稅總額 및 地方稅徵收額에 對比하면 <表 1>과 같다. 農地稅의 徵收規模는 1977年 현재 359.5億원으로서 地方稅收入의 14%에 불과하며, 租稅總額과 農水産部門의 經常價格GNP에 비교하면 각각 1%에 해당되는 규모에 그친다. 또한 地方稅중 農地稅가 차지하는 比率도 60年代初의 40%에서 70年代의 10~14%에 이르러 그 比重과 重

6) 歷史上 가장 오래 된 直接稅로서 農地稅는 1961年 12月 8日 法律 第827號에 의하여 國稅에서 地方稅로 변경되었고, 甲類農地稅는 米穀耕作地에 대하여, 乙類農地稅는 果樹園·茶園·參園·藥園·苗圃·煙草·蔬菜類·花卉類 등의 경작지가 課稅對象이 된다(地方稅法, 同施行令 및 施行規則의 農地稅 관련조항 참조).

7) 地方稅法施行規則 第83條1項에 明示된 農地의 基準收穫量等級은 100坪當 收穫量이 5kg~300kg까지 35等級으로 되어 있다.

8) 기초공제액은 甲類는 1975년부터 37.3萬원, 1977년에 44.3萬원, 1979년부터 53.0萬원으로 조정 인상되었고, 乙類는 같은 기간에 半期別로 3.7萬원, 6.5萬원, 7.8萬원으로 변경되었다.

9) 農地稅率은 課稅標準額을 15萬원 이하, 15萬원 초과~30만 원 이하, 30萬원 초과로 3等級化하여 이에 대하여 甲類의 경우 각각 6%, 8%, 10%의 稅率을, 乙類의 경우 각각 10%, 15%, 20%의 稅率을 적용한다.

〈表 1〉 農地稅徵收推移와 租稅總額 및 地方稅에 대한 比率

	①國民總生產(GNP) (10億韓元)	②農林水產GNP (10億韓元)	③租稅總額 (10億韓元)	④地方稅 (百萬韓元)	⑤農地稅 (百萬韓元)	②/① (%)	④/③ (%)	⑤/④ (%)	⑤/③ (%)
1962	355.54	130.27	37.6	5,211	2,031	36.64	13.86	38.98	5.40
1963	502.90	217.00	43.3	7,400	3,067	43.15	17.09	41.45	7.08
1964	716.31	333.04	50.7	8,824	3,590	46.49	17.40	40.68	7.08
1965	805.72	303.28	69.6	11,352	3,977	37.64	16.31	35.03	5.71
1966	1,037.04	356.87	111.2	16,152	4,964	34.41	14.53	30.73	4.46
1967	1,281.23	385.88	153.0	14,099	3,350	30.12	9.22	23.76	2.19
1968	1,652.93	467.25	230.0	19,357	3,450	28.27	8.42	17.82	1.50
1969	2,155.27	594.77	313.7	26,584	4,780	27.60	8.47	17.98	1.52
1970	2,675.40	710.71	398.0	33,232	3,123	26.56	8.35	9.40	0.78
1971	3,276.24	874.37	492.9	39,811	4,522	26.69	8.08	11.36	0.92
1972	4,002.19	1,040.17	522.9	46,608	5,366	25.99	8.91	11.51	1.03
1973	5,199.12	1,273.18	652.6	74,134	8,087	24.49	11.36	10.91	1.24
1974	7,279.57	1,769.76	1,021.7	107,986	13,866	24.31	10.57	12.84	1.36
1975	9,644.24	2,311.87	1,549.8	158,789	20,841	23.97	10.25	13.12	1.34
1976	13,051.25	2,971.59	2,319.7	220,566	31,637	22.77	9.51	14.34	1.36
1977	16,652.35	3,580.99	2,947.4	258,456	35,945	21.50	8.77	13.91	1.22

資料：韓國銀行，『韓國의 國民所得』，1978.
 內務部(地方財政局)『地方稅統計』，1977.
 經濟企劃院，『主要業務指標』，1978.

〈表 2〉 農地稅 擔稅率 및 租稅公課金 負擔率(戶當平均)

	①農家所得 (韓元)	②農業所得 (韓元)	③租稅公課金 (韓元)	④農地稅 ¹⁾ (韓元)	農地稅率 (%)	租稅公課金負擔率 (%)
1964	125,692	103,745	2,748	1,465	1.41	2.19
1965	112,201	88,812	3,062	1,586	1.79	2.73
1966	130,176	101,430	3,366	1,954	1.93	2.59
1967	149,470	116,359	2,615	1,295	1.11	1.75
1968	178,959	139,936	3,032	1,338	0.98	1.69
1969	217,874	167,128	4,324	1,878	1.12	1.98
1970	255,804	194,037	3,283	1,257	0.65	1.28
1971	356,382	291,909	4,137	1,822	0.62	1.16
1972	429,394	353,381	4,282	2,188	0.62	1.00
1973	480,711	390,320	6,399	3,301	0.85	1.33
1974	674,451	541,902	8,720	5,824	1.07	1.29
1975	872,933	714,838	12,687	8,760	1.23	1.45
1976	1,156,254	921,193	19,540	13,543	1.47	1.69
1977	1,432,809	1,036,136	26,723	14,845	1.43	1.87

註：1) 農地稅徵收額을 農家數로 除한 年度別 平均値임.
 資料：農水產部，『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要性이 輕減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62년부터 1977년까지 經常價格으로 표시한 農地稅徵收額은 17.7배로 증가하였으나 同期間의 農水産部門 經常價格GNP의 증가에 비하면 훨씬 未達되고 있다.

1960年代를 통한 産業構造의 變化는 農家比率과 農業就業者數를 크게 減少시켰고 農家の 租稅公課金負擔率과 農業所得에서 차지하는 農地稅擔稅率도 上述한 추세와 같게 나타나고 있다. <表 2>에 의하면 年度別로 多少의 起伏는 있으나 農地稅擔稅率과 租稅公課金負擔率은 1965年頃 각각 1.8%와 2.8%의 頂點에서 1972년까지 0.6%와 1.0%의 最低率로 떨어졌다가 다시 增加하는 傾向을 보여 1977년에는 각각 1.5% 内外에 이르고 있다.

2. 糧穀 및 肥料補助金

우리나라에 있어서 狹意의 農業補助金은 糧穀管理와 肥料의 兩大特別計定에 의하여 발생한다. 앞서의 分析方法의 理論的 設定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農業補助金政策의 목적은 農·

<表 3> 糧穀·肥料特別計定 黑赤字現況

(단위: 億원)

	糧 穀 管 理				肥 料
	米 穀	大 麥	其 他 ¹⁾	計	
1970	4	-23	-4	-28	-
1971	51	-45	-6	-	-69.73
1972	49	-61	-10	-22	-108.06
1973	9	-88	-175	-254	-149.65
1974	-327	-356	-567	-1,250	-327.44
1975	-163	-220	-553	-930	-700.23
1976	-197	-286	-20	-503	20.02
1977	-219	-433	21	-631	-24.55

註: 1) 秋雜穀, 導入穀, 糧穀管理證券利子 및 保管費 등에 의하여 발생한 赤黑字임.

資料: 經濟企劃院, 行政統計(糧穀管理基金表) 참조.

工產品의 缺狀價格에서 오는 農業의 構造的 취약성을 補完하여 農家所得의 增進과 農産物價格의 安定을 기하는 데 있는 바 이를 위하여 1970年 이후에 나타난 兩計定の 赤字幅을 要略하면 <表 3>과 같다. 1972年까지만 하여도 쌀, 보리, 기타穀物에 대한 農産物補助金의 규모는 20億원을 약간 上廻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補助金의 對象이 보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世界的인 資源波動과 더불어 1973年에 기타穀物에 대한 赤字가 175億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1974年 이후 米穀·麥類에 대한 補助金의 規模가 年度別로 다소 變動이 있으나 가장 작은 1975年의 383億원에서 가장 많은 1974年의 683億원에 이르고 있다. 糧穀管理特別計定の 赤字幅이 크게 增加하기 시작한 1973年과 그 幅이 異例的으로 큰 1974年과 1975年은 각각 175億원, 567億원, 553億원으로서 이들 赤字要因은 國內要因이 아닌 資源波動時에 海外市場에서의 性急한 小麥確保에 따른 損失이 주로 가져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 部分에 해당하는 赤字는 農業補助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赤字를 糧穀管理計定에 轉嫁시키는 것은 不當하다고 하겠다. 1976年 이후 米穀補助金은 年間 200億원 内外, 麥類補助金은 3~400億원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農業補助金의 規模와 推移를 보면 엄밀한 의미, 즉 農業補助金이 크게 隨伴된 高米價政策은 1974年부터 實施되어 왔고 糧穀에 대한 補助金政策의 많은 部分은 보리에 充當되어 왔다. 肥料計定の 赤字幅은 1971年의 年間 69.7億원에서 1975年의 700億원까지 急速한 增加를 보이다가 1976년에는 20億원의 黑字를 나타내었고 1977년에는 다시 25億원의 赤字로 변했다. 이러한 赤字幅의 變化는 油類波動에 의한

原價上昇要因에 대한 補助率이 높다는 데에서도 基因하겠으나 販賣量과의 관계도 적지않게 作用하고 있다. 肥料赤字幅이 큰 1973~75年 間에 肥料販賣量은 1.7~1.9百萬%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販賣量은 다른 年度의 1.3百萬%~1.5百萬%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水準이라고 하겠다.

3. 推定の 利用資料

이상에서 考察한 農業租稅와 補助金の 推移는 總量的 規模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分析이 試圖하는 그 所得再分配效果를 밝히기 위하여는 耕作規模別 또는 所得階層別 租稅 및 補助金の 歸着이 推定되어야 하며 그 歸着金額의 合計가 總量規模와 대체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分析에 利用된 資料는 農水産部가 標本 調査하여 集計·公表하고 있는 『農家經濟調査 結果報告』이다. 이 資料에 農家租稅公課金이 耕地規模別로 調査되어 있기 때문에 租稅公課 金の 所得階層別 歸着을 算定하는데 加工되어야 한다. 여기서 留意하여야 할 것은 農家負擔의 租稅公課金이 地方稅로서 前述한 課稅方法에 의하여 內務部가 徵收하고 있는 農地稅總額規模인가에 대한 檢證이다. 이러한 檢證을 目的으로 農家經濟調査의 耕地規模別 平均租稅負擔額을 『農林統計年報』에 발표되고 있는 耕地規模別 農家口數로 곱하여 合算한 農家租稅推定額을 農家租稅徵收總額에 對比할 때 1974~76年은 90~92%를, 1977年은 87%를 說明하고 있고, 農地稅徵收額에 대비한 農家租

稅徵收額은 1974~76年의 95~98%를 1977年의 122%를 說明하고 있다¹⁰⁾. 따라서 農家經濟調査上的 標本誤差, 調査記錄上的 誤謬, 0.1町步 미만의 農家를 제외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上記한 農家租稅推定額은 信憑性과 一貫性이 인정되기 때문에 農家經濟調査資料에 의한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の 歸層과 再分配效果에 대한 推計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糧穀補助金에 대하여서는 農水産部の 耕地規模別 糧穀收買에 관한 1974~77年間的 行政統計資料와 農林統計年報上的 耕地規模別 農家口數 및 段步當 穀物生産量 등을 參考하여 糧穀補助金の 所得階層別 歸屬을 推定하였다. 또한 肥料補助金の 所得階層別 歸屬은 農家經濟調査의 耕地規模別 家口當肥料費에 農林統計年報에 나타난 耕地規模別 家口數를 곱하여 耕地規模別 肥料費가 總肥料費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算出한 후, 肥料計定の 赤字에 의한 肥料補助金이 이 比率에 따라 歸屬되는 것으로 看做하여 推計하였다. 이러한 推計過程에서 檢討되어야 할 問題點은 農協에 의한 肥料販賣總量이 標本調査로써 推定한 肥料購入量과 어느 정도 一致하는가 하는 것이다. 즉 標本調査結果의 擴大推定(blow-up)은 標本誤差와 非農家農業經營體의 肥料使用 때문에 總量値와 一致될 수 없으나 總供給量의 대부분을 一貫性있게 說明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檢證을 위하여 農家經濟調査의 耕地規模別 家口當 肥料消費 및 在庫變動을 감안한 農家肥料購入量의 計算値는 1974年의 肥料計定上 販賣量의 74%, 1975~77年間은 80% 이상을 說明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된 農家經濟調査資料는 肥料販賣量의 10餘%가 調査對象이 되지 않은 苗木, 造林, 農林企業 등 農業活動에 의하여

10) 1977年의 122%라는 높은 比率은 1977년부터 農家所有의 田畠·果樹園·林野 등에 대한 財產稅가 農家經濟調査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사용된 것으로 類推되므로 그 信憑性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N. 再分配效果의 分析

1. 租稅公課金の 再分配機能

直接稅로서 農地稅가 大宗을 차지하는 農業部門의 耕地規模別 農家所得과 租稅 및 公課金은 <表 4>와 같다. 租稅의 平均負擔率은 1974年의 0.92%에서 1977年의 1.54%로 점진적인 증가현상을 보이며 이를 耕地規模別로 보면 어느 정도의 累進性을 나타내고 있다. 公

課金負擔率은 分析對象期間인 1974~77年의 4個年에 걸쳐 0.33%~0.38%의 미세한 변동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耕地規模別 公課金負擔率은 1974年과 1975年에 中産層에는 다소 累進的이나 2町步 이상 耕地農家에는 中立的 내지는 逆進的 傾向이 있고 1976年 이후는 逆進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耕地規模別 資料를 利用하여 所得階層別 平均農家所得과 租稅·公課金負擔을 推計한 結果(表 5 참조)에 따르면 1974年과 1975年은 第1五分位所得階層의 擔稅率 0.1% 미만에서 第5五分位所得階層의 1.8%~2.6%의 累進性을 나타내고 있고 1976年과 1977年의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은 前述한 바와 같이 農家の 名目所得增加에 따라 基礎控除額의 調整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서

<表 4> 耕地規模別 農家所得과 租稅·公課金(1974~77)

(단위: 원)

	0.5町步 未滿		0.5~1.0町步		1.0~1.5町步		1.5~2.0町步		2.0町步 이상		平 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974												
農家所得	401,075	100.00	575,220	100.00	771,917	100.00	1,040,766	100.00	1,413,530	100.00	674,451	100.00
租稅	1,016	0.25	3,213	0.56	7,780	1.01	11,768	1.13	26,941	1.90	6,177	0.92
公課金	1,396	0.35	2,407	0.42	2,820	0.36	3,925	0.37	4,884	0.35	2,543	0.38
合計	2,412	0.60	5,620	0.98	10,600	1.37	15,693	1.50	31,825	2.25	8,720	1.29
1975												
農家所得	532,478	100.00	776,153	100.00	974,997	100.00	1,253,931	100.00	1,734,872	100.00	872,933	100.00
租稅	2,105	0.40	5,100	0.66	10,130	1.04	20,142	1.61	46,546	2.68	9,831	1.13
公課金	1,626	0.31	2,595	0.33	3,364	0.35	4,932	0.39	4,207	0.24	2,856	0.33
合計	3,731	0.70	7,695	0.99	13,494	1.39	25,074	2.00	50,753	2.92	12,687	1.45
1976												
農家所得	670,191	100.00	978,223	100.00	1,318,888	100.00	1,697,316	100.00	2,523,302	100.00	1,156,254	100.00
租稅	4,169	0.62	8,317	0.85	15,997	1.21	33,078	1.95	65,848	2.61	15,593	1.35
公課金	2,611	0.39	3,519	0.36	4,262	0.32	6,164	0.36	6,729	0.27	3,947	0.34
合計	6,780	1.01	11,836	1.21	20,259	1.54	39,242	2.31	72,577	2.88	19,540	1.69
1977												
農家所得	872,393	100.00	1,192,873	100.00	1,651,603	100.00	2,162,803	100.00	2,993,356	100.00	1,432,809	100.00
租稅	7,260	0.83	10,110	0.85	25,177	1.52	45,087	2.08	99,400	3.32	22,029	1.54
公課金	3,377	0.39	4,096	0.34	4,835	0.29	6,360	0.29	8,791	0.29	4,694	0.33
合計	10,637	1.22	14,206	1.19	30,012	1.82	51,447	2.38	108,191	3.61	26,723	1.87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表 5〉 農家所得階層別 平均所得과 租稅公課金(1974~77)

(단위: 원)

	第1五分位		第2五分位		第3五分位		第4五分位		第5五分位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1974										
所得(千원)	306.6	100.00	406.7	100.00	574.7	100.00	759.4	100.00	1,372.8	100.00
租稅·公課金	672	0.22	2,516	0.62	5,610	0.98	10,283	1.35	30,064	2.19
租稅	79	0.03	1,087	0.27	3,206	0.56	7,489	0.98	25,284	1.84
公課金	593	0.19	1,429	0.35	2,404	0.42	2,794	0.37	4,780	0.35
1975										
所得(千원)	363.1	100.00	534.7	100.00	743.6	100.00	941.4	100.00	1,670.4	100.00
租稅·公課金	976	0.27	3,767	0.70	7,166	0.96	12,514	1.33	47,309	2.83
租稅	144	0.04	2,132	0.40	4,700	0.63	9,280	0.99	43,004	2.57
公課金	832	0.23	1,635	0.30	2,466	0.33	3,234	0.34	4,305	0.26
1976										
所得(千원)	473.2	100.00	710.1	100.00	963.7	100.00	1,343.9	100.00	2,206.9	100.00
租稅·公課金	3,540	0.75	7,434	1.05	11,598	1.20	21,512	1.60	59,808	2.71
租稅	1,982	0.42	4,609	0.65	8,072	0.84	17,065	1.27	52,822	2.39
公課金	1,558	0.33	2,825	0.40	3,526	0.36	4,447	0.33	6,986	0.32
1977										
所得(千원)	603.8	100.00	885.8	100.00	1,173.6	100.00	1,665.8	100.00	2,951.6	100.00
租稅·公課金	7,647	1.27	10,787	1.22	13,991	1.19	30,608	1.84	105,337	3.57
租稅	4,871	0.81	7,380	0.83	9,938	0.85	25,731	1.55	96,669	3.28
公課金	2,776	0.46	3,407	0.39	4,053	0.34	4,877	0.29	8,668	0.29

註: 農家經濟調査의 所得階層別 家口比率을 農林統計年報의 0.1町步이상 農家口數에 적용시켜 五分位階層別 農家 戶籍 平均所得을 算定한 後 農家經濟調査에 나타난 耕地規模別 租稅, 公課金負擔의 平均變化率에 따라 計算한 推定值임.
 資料: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査結果報告』.

〈表 6〉 農業所得階層別 平均農業所得과 租稅負擔率(1974~77)

	第1五分位	第2五分位	第3五分位	第4五分位	第5五分位
1974					
農業所得 ¹⁾ (千원)	151.0	245.4	453.6	648.5	1,223.9
租稅(원)	79	1,087	3,206	7,489	25,284
租稅負擔率(%)	0.05	0.44	0.71	1.15	2.07
1975					
農業所得 ¹⁾ (千원)	160.0	312.7	565.4	804.8	1,538.6
租稅(원)	144	2,132	4,700	9,280	43,004
租稅負擔率(%)	0.09	0.68	0.83	1.15	2.80
1976					
農業所得 ¹⁾ (千원)	202.8	421.1	741.3	1,155.2	1,937.0
租稅(원)	1,982	4,609	8,072	17,065	52,822
租稅負擔率(%)	0.98	1.09	1.09	1.48	2.73
1977					
農業所得 ¹⁾ (千원)	174.7	380.0	796.6	1,330.5	2,518.3
租稅(원)	4,871	7,380	9,938	25,731	96,669
租稅負擔率(%)	2.79	1.94	1.25	1.93	3.84

註: 1) 農家經濟調査의 耕地規模別 農業所得의 比率을 <表 4>의 所得階層別 農家所得에 調整한 計算值임.

派生한 直接稅의 低所得階層擔稅의 逆進現象을 보이고 있다. 한편 公課金負擔은 그 累進도가 극히 낮아 所得階層의 高低에 관계없이 0.2%~0.35% 범위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農家租稅의 大宗이 農地稅이고, 耕地規模가 작은 農家가 低所得農家일 可能性과 小規模農家の 農業外所得이 큰 것 등을 감안한 所得階層別 農業所得에 대한 租稅負擔率을 試算한 結果가 <表 6>이다. 이 表에 의하면 全般的인 農業租稅의 累進性이 <表 4>에 비하여 크게 緩和될 뿐아니라 1977년에는 第3五分位를 중심으로 그 이하 階層에는 逆進의이고 그 이상 階層에 대하여는 다소 累進의인 傾向을 나타내어 農地稅課稅上의 不合理性을 露呈하고 있다. 租稅·公課金の 所得階層別 負擔率과 累進率이 크면 클수록 所得再分配效果가 크게 나타나는 一般的 性格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現行 農業租稅 및 公課金の 所得再分配效果는 극히 微微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4~77年間 農家所得의 「지

니」係數에 의한 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率은 1.3% 내지 1.7%로서 先進諸國의 所得稅에 의한 所得再分配率 4% 내지 27%보다 훨씬 낮으며¹¹⁾ 一般的인 假定에 의한 美國 所得稅의 所得再分配率의 1/2정도이다¹²⁾. 특히 現行 農家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機能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下厚上薄의 再分配效果가 아닌 第4五分位所得階層까지 비교적 높은 所得再分配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77년에는 第3五分位에 所得再分配效果가 컸다.

이상과 같은 農業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에 대한 結論은 같은 문제에 관한 「바알」(R. W. Bahl)과 「헬러」(P. S. Heller)의 研究結果와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의 研究結果는 直接·間接稅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나 「바알」에 의하여 農家租稅公課金の 歸屬이 약간의 所得再分配效果가 있다는 結論과 相違하고, 「헬러」에 의하여 農地稅에 累進性이 있다는 試算結果는 本 研究의 結果와 相反되지는 않고 있다¹³⁾. 다만 「헬러」의 研究結果는 한가

<表 7> 農家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效果

(단위: %)

	1974		1975		1976		1977	
	所得占有率	課稅後所得占有率	所得占有率	課稅後所得占有率	所得占有率	課稅後所得占有率	所得占有率	課稅後所得占有率
第1五分位	8.97	9.08	8.54	8.66	8.31	8.40	8.29	8.38
第2五分位	11.89	11.99	12.57	12.70	12.46	12.56	12.17	12.31
第3五分位	16.80	16.88	17.49	17.61	16.91	17.02	16.12	16.30
第4五分位	22.20	22.22	22.13	22.21	23.59	23.64	22.88	22.99
第5五分位	40.14	39.83	39.27	38.82	38.73	38.38	40.54	40.0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지니」係數	0.2906	0.2869	0.2841	0.2793	0.2879	0.2842	0.3008	0.2958
所得再分配率	1.27		1.69		1.29		1.66	

11) 日本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 『所得·資産分配의 實態와 問題點』, 1975, p.118. 이에 의하면 所得稅에 의한 再分配率은 美國(1966) 5.71%, 英國(1967) 10.24%, 西獨(1968) 4.36%, 스웨덴(1970) 27.32%, 日本(1970) 4.46%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12) J.A. Pechman & B.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p.56.

13) Roy W. Bahl. *op. cit.*, p.47.; Peter S. Heller, *op. cit.*, p.3 and p.17.

지 점에서 여기의 推計結果와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렐러」가 推定한 1976년의 農地稅와 각종 直接稅의 負擔率이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本研究에서는 1976년의 農家租稅와 公課金負擔率이 所得階層에 따라 0.75%에서 2.71%에 이르는 데 비하여 그는 0.88%~1.94%로 推定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前者가 農家經濟調査의 資料를 이용하였고 後者는 稅制를 중심으로 租稅歸屬에 관한 假說을 導入하여 推定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2. 補助金の 再分配機能

1974~77年間 糧穀 및 肥料補助金の 農家所得階層別歸屬額은 <表 8>과 같다. 이 表에 의하면 年度別 糧穀·肥料補助金の 規模에 따라 階層別歸屬額의 變化가 크게 나타나 있다. 補助金の 規模가 가장 컸던 1974년에 階層別 補助金 歸屬額은 第1五分位所得階層에 家口當 34.5千원, 第5五分位所得階層에 70.8千원, 平均 46.0千원이며 補助金規模가 가장 작았던

<表 8> 所得階層別 農業補助金 歸屬金額과 農業所得比率(1974~77)

(단위 : 경상 1000원)

	第1五分位	第2五分位	第3五分位	第4五分位	第5五分位	平 均
1974						
農家所得(A)	306.6	406.7	574.7	759.4	1,372.8	684.1
農業所得(B)	151.0	245.4	453.6	648.5	1,223.9	544.5
B/A (%)	49.25	60.34	78.93	85.40	89.15	79.60
미곡보조금	9.7	12.6	10.6	16.4	23.3	14.5
맥류보조금	19.9	25.6	10.8	11.4	12.7	16.1
비료보조금	4.9	6.6	12.8	17.8	34.8	15.4
1975						
農家所得(A)	363.1	534.7	743.6	941.4	1,670.4	850.6
農業所得(B)	160.0	312.7	565.4	804.8	1,538.6	676.3
B/A (%)	44.06	58.48	76.04	85.49	92.11	79.51
미곡보조금	4.6	6.7	5.4	7.4	10.6	7.0
맥류보조금	9.8	14.3	8.0	7.5	8.3	9.6
비료보조금	9.0	13.3	25.7	37.5	74.3	32.0
1976						
農家所得(A)	473.2	710.1	963.7	1,343.9	2,206.9	1,139.6
農業所得(B)	202.8	421.1	741.3	1,155.2	1,937.0	891.5
B/A (%)	42.86	59.30	76.92	85.96	87.77	78.23
미곡보조금	5.0	7.0	6.7	10.8	16.3	9.1
맥류보조금	12.8	17.0	10.9	11.1	12.4	12.8
비료보조금	-0.3	-0.4	-0.8	-1.2	-2.0	-0.9
1977						
農家所得(A)	603.8	885.8	1,173.6	1,665.8	2,951.6	1,456.1
農業所得(B)	174.7	380.6	796.7	1,330.5	2,518.3	1,040.1
B/A (%)	28.93	42.96	67.88	79.87	85.32	71.43
미곡보조금	5.5	8.0	8.4	11.3	18.0	10.2
맥류보조금	19.6	27.8	16.6	16.2	11.8	18.4
비료보조금	0.3	0.5	1.0	1.5	2.9	1.2

1976년에는 같은 所得階層에 각각 17.5千원, 26.7千원, 平均 21.0千원이 歸屬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를 1974年과 1976年의 平均農家所得과 平均農業所得에 對比하면 1974年에 6.7%~8.5%, 1976年에 1.8%~2.4%에 불과하지만 같은 規模의 補助金이라 해도 所得階層別 歸屬의 樣相에 따라 所得再分配效果는 衡平造成的, 中立的 또는 衡平沮害의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農業補助金의 所得階層別 歸屬比率을 概觀하면, <表 9>와 같이 各年도의 米穀과 肥料補助金의 50%~70%가 上位 五分位 高所得階層에 귀속하고 있고 麥類補助金은 1976年을 제외하고는 50% 이상이 低所得 五分位階層에 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麥類補助金이 가장 衡平造成的인 所得再分配機能을 지니고 있으며 米穀 및 肥料補助金은 그 反對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듯한 감이 있으나, 이는 高所得階層의 生産物量 및 肥料消費量이 低所

得階層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現象이다.

所得階層別로 農家所得에서 차지하는 農業所得의 차이를 감안하여 各種補助金의 歸屬을 農家所得과 農業所得에 對比한 結果는 <表 10>과 같다. 表에 의하면 農家所得보다 農業所得에 대한 所得階層別 補助金歸屬率이 보다 衡平造成的인 傾向이 있다. 農業補助金의 規模가 컸던 1974年에 農家所得과 農業所得을 기준으로 한 第1五分位 低所得階層의 補助金比率은 각각 11.3%와 22.9%, 第5五分位 高所得階層의 그것은 5.2%와 5.8%에 불과하다. 補助金規模가 가장 작았던 1976年에는 第1五分位階層에는 農家所得의 3.7%와 農業所得의 8.6%, 第5五分位階層에는 農家所得의 1.2%와 農業所得의 1.4%의 補助金이 歸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表에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糧穀補助金의 衡平造成的 경향과 肥料補助金의 衡平沮害의 경향이 相殺되어 나타

<表 9> 所得階層別 農業補助金의 歸屬比率(1974~77)

	(단위 : %)					
	全 國	第 1 五分位	第 2 五分位	第 3 五分位	第 4 五分位	第 5 五分位
1974						
米穀補助金	100.00	13.36	17.36	14.60	22.59	32.09
麥類補助金	100.00	24.72	31.80	13.42	14.16	15.90
肥料補助金	100.00	6.37	8.58	16.65	23.15	45.25
1975						
米穀補助金	100.00	13.22	19.25	15.52	21.26	30.75
麥類補助金	100.00	20.46	29.85	16.70	15.66	17.33
肥料補助金	100.00	5.63	8.32	16.08	23.47	46.50
1976						
米穀補助金	100.00	10.94	15.32	14.66	23.63	35.45
麥類補助金	100.00	20.37	26.82	15.56	17.55	19.70
肥料補助金	100.00	6.38	8.51	17.02	25.53	42.56
1977						
米穀補助金	100.00	10.74	15.62	16.41	22.07	35.16
麥類補助金	100.00	21.28	30.19	18.13	17.59	12.81
肥料補助金	100.00	4.84	8.07	16.13	24.19	46.77

단 것이다.

上述한 農業補助金の 所得階層別 歸屬은 <表 11>과 같은 所得再分配效果를 보여주고 있다. 1974年の 경우 農業補助金으로 인하여 兩五分位 低所得階層의 所得占有率을 0.5%內外 증가시킨 반면 第5五分位 高所得階層의 그것은 0.7% 감소시켰는데 이같은 再分配效果는 麥類補助金에 의한 寄與가 현저한 반면 肥料

補助金은 그 效果를 相殺시키고 있다. 그 결과 「지니」係數의 所得再分配率은 農業補助金이 3.9%, 糧穀補助金이 4.5%로 나타나고 있다. 1975年の 경우 糧穀補助金에 의한 所得再分配效果가 「지니」係數의 再分配率로 3.4%이나 逆進的인 肥料補助金の 영향으로 그 效果가 0.49%로 낮아지고 있다.

<表 10> 所得階層別 農家所得 및 農業所得對比 農業補助金 歸屬比率(1974~77)

(단위 : %)

		第1五分位	第2五分位	第3五分位	第4五分位	第5五分位	平均	
1974	農家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3.16	3.10	1.84	2.16	1.70	2.12
		麥類補助金比率	6.49	6.29	1.88	1.50	0.93	2.35
		肥料補助金比率	1.60	1.62	2.23	2.34	2.54	2.25
		合計	11.25	11.01	5.95	6.00	5.17	6.72
1975	農業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6.42	5.13	2.34	2.53	1.90	2.66
		麥類補助金比率	13.18	10.43	2.38	1.76	1.05	2.96
		肥料補助金比率	3.25	2.69	2.82	2.74	2.84	2.83
		合計	22.85	18.25	7.54	7.03	5.79	8.45
1976	農家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1.27	1.25	0.73	0.79	0.64	0.82
		麥類補助金比率	2.70	2.67	1.08	0.80	0.50	1.13
		肥料補助金比率	2.48	2.49	3.46	3.98	4.45	3.76
		合計	6.45	6.41	5.27	5.57	5.59	5.71
1977	農業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2.88	2.14	0.96	0.92	0.70	1.04
		麥類補助金比率	6.13	4.57	1.41	0.93	0.54	1.42
		肥料補助金比率	5.63	4.25	4.55	4.66	4.83	4.73
		合計	14.64	10.96	6.92	6.51	6.07	7.19
1978	農家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1.06	0.99	0.70	0.80	0.73	0.80
		麥類補助金比率	2.70	2.39	1.13	0.83	0.56	1.12
		肥料補助金比率	-0.06	-0.06	-0.08	-0.09	-0.09	-0.08
		合計	3.70	3.32	1.75	1.54	1.20	1.84
1979	農業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2.47	1.66	0.90	0.93	0.84	1.02
		麥類補助金比率	6.31	4.04	1.47	0.96	0.64	1.44
		肥料補助金比率	-0.15	-0.10	-0.11	-0.10	-0.10	-1.10
		合計	8.63	5.60	2.26	1.79	1.38	2.36
1980	農家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0.91	0.90	0.72	0.68	0.61	0.70
		麥類補助金比率	3.25	3.14	1.42	0.97	0.40	1.26
		肥料補助金比率	0.05	0.06	0.09	0.09	0.10	0.08
		合計	4.21	4.10	2.23	1.74	1.11	2.04
1981	農業所得比	米穀補助金比率	3.15	2.10	1.05	0.85	0.71	0.98
		麥類補助金比率	11.22	7.30	2.10	1.22	0.47	1.77
		肥料補助金比率	0.17	0.13	0.13	0.11	0.12	0.12
		合計	14.54	9.53	3.28	2.18	1.30	2.87

3. 農業租稅와 補助金의 綜合的 再分配效果

農業租稅制度와 補助金政策에 대한 所得再分配效果는 1974~77年間に 있어서 租稅公課金과 補助金의 所得階層別歸屬을 감안한 「지니」係數와 所得再分配率로써 評價할 수 있다. <表 12>에 要約된 바와 같이 農業租稅와 補助金의 綜合的인 再分配效果는 年度別로 차이는 있으나 農業補助金이 없을 경우를 基準으로 한 農家所得分布의 「지니」係數를 2~5%정도 改善시키고 있다. 農業所得에 대한 綜合的

再分配效果는 農家所得의 그것보다 1974年은 1.5%「포인트」높게 나타났고 1976年과 1977年은 큰 변화가 없다.

農家所得과 農業所得의 再分配效果가 가장 큰 것은 麥類補助金으로서 租稅의 再分配效果와 더불어 綜合的인 所得再分配效果의 대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 米穀補助金의 可處分所得再分配效果는 1974年度를 제외하면 農家所得과 農業所得에 대하여 1%「포인트」이하의 근소한 再分配效果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綜合的 再分配效果의 分析을 볼 때, 農業補助金이 高米價政策을 연상할이 만큼 一般的으로 높이 評價되는 觀念이 支配

<表 11> 所得階層別 農業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五分位所得占率과 再分配指數)

(단위 : %)

	第 1 五分位	第 2 五分位	第 3 五分位	第 4 五分位	第 5 五分位	Gini係數	所得再 分配指數
1 9 7 4							
① 農業補助가 없을 경우의 농가소득분포	8.53	11.34	16.94	22.38	40.81	0.3024	—
② 양곡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9.02	11.97	16.81	22.18	40.02	0.2888	4.50
③ 비료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48	11.28	16.93	22.39	40.92	0.3040	-0.53
④ 농업보조금 하의 농가소득분포	8.97	11.89	16.80	22.20	40.14	0.2906	3.90
⑤ ④-①	0.44	0.55	-0.14	-0.18	-0.67	—	—
1 9 7 5							
① 農業補助가 없을 경우의 농가소득분포	8.47	12.48	17.57	22.16	39.32	0.2855	—
② 양곡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65	12.74	17.54	22.08	38.99	0.2801	3.44
③ 비료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36	12.32	17.51	22.21	39.60	0.2895	-1.40
④ 농업보조금 하의 농가소득분포	8.54	12.57	17.49	22.13	39.27	0.2841	0.49
⑤ ④-①	0.07	0.09	-0.08	-0.03	-0.05	—	—
1 9 7 6							
① 농업보조가 없을 경우의 농가소득분포	8.15	12.28	16.93	23.66	38.98	0.2922	—
② 양곡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30	12.46	16.91	23.59	38.74	0.2880	1.44
③ 비료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15	12.28	16.93	23.66	38.98	0.2922	0
④ 농업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31	12.46	16.91	23.59	38.73	0.2879	1.47
⑤ ④-①	0.16	0.18	-0.02	-0.07	-0.25	—	—
1 9 7 7							
① 농업보조가 없을 경우의 농가소득분포	8.11	11.92	16.09	22.95	40.93	0.3067	—
② 양곡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30	12.17	16.12	22.88	40.53	0.3007	1.92
③ 비료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11	11.91	16.09	22.95	40.94	0.3068	-0.03
④ 농업보조금 제도하의 농가소득분포	8.29	12.17	16.12	22.88	40.54	0.3008	1.92
⑤ ④-①	0.18	0.15	0.03	-0.07	-0.39	—	—

的이나 農家所得의 分配와 再分配라는 觀點에서는 그 政策의 實效性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近年에 있어서 肥料補助金은 肥料計定の 收支差를 縮小함으로써 그 歸屬의 逆進性이 緩和된 것으로 보이거나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農家所

得에 대하여는 負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결과하였고 農業所得에 대하여는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財政인플레이 要因이 되는 肥料補助金은 肥料生産業體의 支援 이의의 커다란 意義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表 12〉 農業租稅와 補助金の 可處分所得 再分配効果

	1974	1975	1976	1977
가. 農家所得				
農業補助金 없을시				
農家所得「지니」係數	0.3024	0.2855	0.2922	0.3067
租稅의 再分配效果				
租稅前「지니」係數	0.2906	0.2841	0.2879	0.3008
租稅後「지니」係數	0.2869	0.2793	0.2842	0.2958
所得再分配率 (%)	1.27	1.69	1.29	1.66
租稅 및 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2869	0.2793	0.2842	0.2958
所得再分配率 (%)	5.13	2.17	2.74	3.55
租稅 및 麥類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2877	0.2761	0.2847	0.2963
所得再分配率 (%)	4.86	3.29	2.57	3.39
租稅 및 米穀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2958	0.2792	0.2880	0.3012
所得再分配率 (%)	2.18	2.21	1.44	1.79
租稅 및 肥料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3003	0.2847	0.2884	0.3020
所得再分配率 (%)	0.69	0.28	1.30	1.53
나. 農業所得				
農業補助金 없을시				
農業所得「지니」係數	0.3974	0.3940	0.3848	0.4458
租稅의 再分配效果				
租稅前「지니」係數	0.3745	0.3844	0.3771	0.4335
租稅後「지니」係數	0.3712	0.3800	0.3740	0.4300
所得再分配率 (%)	0.88	1.14	0.82	0.81
租稅 및 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3712	0.3800	0.3740	0.4300
所得再分配率 (%)	6.59	3.55	2.81	3.54
租稅 및 麥類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3770	0.3822	0.3755	0.4322
所得再分配率 (%)	5.13	2.99	2.42	3.05
租稅 및 米穀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3876	0.3868	0.3801	0.4402
所得再分配率 (%)	2.47	1.83	1.22	1.26
租稅 및 肥料補助金の 再分配效果				
「지니」係數	0.3933	0.3894	0.3818	0.4425
所得再分配率 (%)	1.03	1.17	0.78	0.74

V. 狀況設定에 따른 政策代案의 檢證

어떤 制度 또는 政策을 改善할 수 있는 現實的 範圍는 公益增進을 위한 政策目標와 調和를 이룰 수 있는 方案이 有限하기 때문에 相衡되는 目的函數의 得失關係(trade-off)를 감안하여 때로는 取舍選擇에 의한 次善의 方案을 찾아야 할 경우가 일반적이다. 農業租稅 및 補助金의 所得再分配를 增進하는 데 있어서 그 代案은 다음과 같은 要件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財政學的 要件으로서 國民의 租稅負擔衡平의 原則에 따라 같은 所得階層의 農家와 非農家の 擔稅率은 같아야 하며 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의 提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累進의 이라야 한다. 또한 景氣變動의 調整手段으로 正當化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財政赤字要因을 제거 혹은 抑制해야 한다.

둘째, 所得分配의 觀點에서 農業補助金政策은 都農間의 所得不均衡을 최대한 시정하고 部門間의 衡平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동시에 上記한 財政學的 要件을 충족시켜

야 한다. 아울러 農業租稅와 補助金은 農業部門內의 所得不平等度를 최대한 낮추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制約條件을 가능한 한 충족시키며 農業租稅와 補助金政策의 代案을 狀況設定에 의하여 摸索해 보기로 한다.

1. 農業租稅制度의 改善

가. 租稅公課金의 負擔率調整

農家負擔 租稅公課金은 前述한 바와같이 農地稅가 그 大宗을 이루고 있고 農地稅의 課稅額 決定方法을 볼 때 農地稅는 農業所得稅의 性格을 띠고 있으므로 租稅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은 非農業部門에 대한 所得控除額에 相應하여야 할 것이다. 基礎控除額에 있어서의 都農間 衡平 有無는, 1977年 현재 農地稅의 基礎控除額 57.3萬원(甲類 44.3萬원과 乙類 13.0萬원)¹⁴⁾이 綜合所得 基礎控除額 96.0萬원의 59.7%에 불과하나 農家の 農外所得比率이 21.2%에 이르고 있어 非農業所得에 비하여 미흡한 基礎控除를 부분적으로 補完하고 課稅率이 낮다는 점에서 都農間의 租稅負擔上의 衡平은 農家に 有利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農家の 農地稅와 租稅公課金負擔은 非農家家口의 所得稅負擔額이나 都市家口의 租稅公課金負擔率이 비하여 매우 낮은 狀態이다. <表 13>에 의하면 60年代初에는 農家戶當 農地稅負擔이 非農家の 平均 所得稅負擔의 40~50% 수준이었으나 1970년에는 약 5% 수준으로 下落하였다가 1975年頃에는 20% 수준에 이르고 있어¹⁵⁾ 1967年以後의 家口當 所得稅와 農地稅의 差異는 農家の 租稅負擔이 平均적으로 非農家보다 가법다는 有意한 해석이 가능하다.

14) 農地稅의 基礎控除額의 算出根據는 農水産部の『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에서 農業租收入中 米穀收入 및 乙類農地에서 파생되는 農作物收入이 차지하는 각각의 比率를 綜合所得基礎控除額에 곱하여 算出하고 있다. 예컨대 1977년의 甲類農地稅基礎控除額은 1976年の 農業租收入 1,165,956원중 米穀生産所得 524,175원이 차지하는 比率 45.0%을 綜合所得基礎控除額 96만원에 곱하여 산출한 것이다.

15) 이러한 部門間의 家口當 租稅負擔의 差異와 不規則性은 앞에서 밝힌듯이 農地稅課稅方法의 硬直性에 기인한 불합리성으로 해석된다. 즉 農地稅 기초공제가 경상가격으로 평가된 농업성장율에 相應토록 조정되지 않는 집과, 農家規模 및 農地의 所在地를 감안하지 않고 農業收入에 대한 米穀生産所得比率을 획일적으로 기초공제액 算定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表 13〉 都・農間 直接稅의 比較

	農 家		非 農 家			A/B×100 (%)	
	農地稅 (百萬圓)	農家戶數 (千戶)	農家戶當農地稅(A) (圓)	所得稅 (百萬圓)	非農家口數(千戶)		非農家戶當所得稅(B) (圓)
1962	2,031	2,469	823	4,572	2,095	2,182	37.7
1963	3,067	2,416	1,270	5,938	2,284	2,600	48.8
1964	3,590	2,450	1,465	8,615	2,391	3,603	40.7
1965	3,977	2,507	1,586	10,041	2,373	4,231	37.5
1966	4,964	2,540	1,954	20,305	2,595	7,825	25.0
1967	3,350	2,587	1,295	30,950	2,706	11,438	11.3
1968	3,450	2,579	1,338	47,600	2,878	16,539	8.1
1969	4,780	2,546	1,878	69,609	3,080	22,600	8.3
1970	3,123	2,483	1,257	84,452	3,374	25,030	5.0
1971	4,522	2,482	1,822	107,615	3,233	33,286	5.5
1972	5,366	2,452	2,188	104,697	3,493	29,973	7.3
1973	8,087	2,450	3,301	123,710	3,606	34,307	9.6
1974	13,866	2,381	5,824	164,660	3,915	42,059	13.8
1975	20,841	2,379	8,760	198,619	4,378	45,368	19.3
1976	31,637	2,336	13,543	319,021	4,526	70,486	19.2
1977	35,945	2,304	14,845	352,715	4,707	74,934	19.8

資料：內務部, 『地方稅統計』.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經濟企劃院, 『主要行政統計』.

〈表 14〉 都・農間 租稅公課金負擔率의 水平的 比較(月平均)

	全國平均	耕地規模 및 所得水準 ¹⁾					
		0.5 정보 미	0.5~1.0	1.0~1.5	1.5~2.0	2.0 정보 상	
1974 農 家	所得(圓)	56,204	33,423	47,935	64,326	86,731	117,794
	조세공과금부담율(%)	1.29	0.60	0.98	1.37	1.50	2.25
1974 都市勤勞者	所得(圓)	47,780	32,040	47,890	62,910	100,790	100,790
	조세공과금부담율(%)	1.70	0.75	1.13	2.13	3.00	3.00
1975 農 家	所得(圓)	72,744	44,373	64,679	81,250	104,494	144,573
	조세공과금부담율(%)	1.45	0.70	0.99	1.39	2.00	2.92
1975 都市勤勞者	所得(圓)	65,540	44,180	64,460	84,980	106,500	161,790
	조세공과금부담율(%)	2.61	0.95	1.52	2.39	2.98	5.30
1977 農 家	所得(圓)	96,355	55,849	81,519	109,907	141,443	210,275
	조세공과금부담율(%)	1.69	1.01	1.21	1.54	2.31	2.88
1977 都市勤勞者	所得(圓)	88,270	54,070	85,130	104,640	145,195	235,370
	조세공과금부담율(%)	3.34	0.94	1.67	2.45	5.01	6.96
1977 農 家	所得(圓)	119,401	72,699	99,406	137,634	180,234	249,446
	조세공과금부담율(%)	1.87	1.22	1.19	1.82	2.38	3.61
1977 都市勤勞者	所得(圓)	105,910	78,960	99,770	139,720	180,370	240,730
	조세공과금부담율(%)	2.84	1.24	1.69	2.69	3.99	4.89

註：1) 耕地規模別 月平均 農家所得을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階層에 맞추어 該當勤勞者家口의 月平均 所得에 대한 租稅公課金 負擔율과 農家의 그것과를 比較한 것임.

資料：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뿐만 아니라 <表 14>와 같이 耕地規模別 農家所得과 租稅公課負擔率을 都市勤勞者家口の 그것과 對比할 때 農家の 租稅公課金負擔率이 都市勤勞者家口보다 낮으며 1977年の 所得階層別 都·農間の 租稅公課金負擔率을 比較하면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勤勞者家口の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負擔과 그 累進性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특히 農家の 中間所得階層의 그것은 擔稅率이나 그 累進度가 낮아 部門別·階層別 擔稅率의 不合理와 現行綜合稅制가 지닌 취약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農業直接稅로서의 農地稅는 基礎控除의 現實的 調整으로 小農의 租稅負擔을 경감시키고 累進率을 최소화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擔稅率에 相應하게 引上·調整할 필요가 있다.

<表 15> 都·農間 租稅公課金負擔率 比較(1977)

(단위: %)

所得階層	都市家口		農 家	
	全家口 ¹⁾	勤勞者家口	農家所得	農業所得
30千원 미만	1.3	1.2	—	—
30~50	1.1	0.8	—	2.9
50~70	1.4	0.8	—	1.7
70~90	1.7	1.2	1.2	—
90~110	2.0	1.7	1.2	2.3
110~130	2.5	2.1	—	—
130~150	2.7	2.7	1.8	2.9
150~170	2.9	3.0	—	—
170~190	3.6	4.0	2.4	—
190~210	3.4	3.9	—	—
210~230	3.6	4.8	—	4.2
230~250	3.6	4.9	4.2	—
250~300	4.0	5.1	—	—
300~350	3.7	5.2	—	—
350~400	5.4	5.7	—	—
400千원 이상	4.1	7.8	—	—

註: 1) 費用支出에 대한 租稅公課金 比率임.

資料: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7.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1978.

나. 租稅平準化에 따른 所得再分配效果

農業租稅徵收上의 技術的인 問題解決을 前提로 하여 都市勤勞者家口가 부담하고 있는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負擔率을 農家に 그대로 적용시켜 平準化할 경우 農業部門에서의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과 追加徵收可能額은 <表 16>과 같다. 이 表와 같이 1976年과 1977年은 低所得農家階層이 相應한 都市勤勞所得階層보다 租稅公課金負擔率이 높고 第3~5五分位階層은 그 反對現象을 나타내어 租稅負擔衡平의 原則에 어긋나 있다. 이를 是正하여 擔稅率의 平準化로써 追加徵收可能한 租稅公課金總額은 1974년부터 1977년까지의 4個年에 각각 20.5億원, 197.8億원, 420.7億원, 246億원에 이른다. 이같은 追加徵收可能額은 4個年間に 발생한 양곡 및 비료계정의 赤字累計 4,352.2億원의 20.3%에 해당한다. 또한 租稅公課金 負擔率의 平準化 前後의 農家可處分所得再分配效果는(表 17 참조) 1975~77年の 1.29%~1.69%에서 2.25%~3.79%에 이르고 있으므로 租稅公課金の 平準化는 租稅衡平의 原則에 符合될 뿐만 아니라 所得再分配機能의 提高에도 그 效果가 크다고 하겠다.

2. 農業補助金の 運營改善에 따른 再分配效果

一定規模의 農業補助金이라 할지라도 補助金の 所得階層別 歸屬額은 糧穀收買方法과 肥料價格政策의 衡平造成的 運用여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着想 아래 1974~77年間の 農業補助金歸屬의 效果가 現實值보다 크도록 <表 18>과 같은 狀況設定(simulation)을 試圖하였

다. 이같은 狀況設定을 토대로 계산한 農家所得의 「지니」係數와 所得再分配率을 要約하면 <表 19>와 같은 바, 1975年은 현실적으로 農業補助金の 규모가 컸으나 逆進적인 肥料補助金の 相對的 比重이 커서 0.49%에 불과한 所得再分配率을 示顯했으나 狀況設定 I에서 6.

37%, 狀況設定 II에서 8.13%의 높은 所得再分配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1974年은 狀況設定 I에서 11.24%의 가장 큰 再分配效果가 가능하며, 1976年과 1977年은, 狀況設定 I의 경우, 肥料補助計定에 均衡을 이루었고 糧穀管理의 赤字가 相對的으로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表 16> 租稅公課金 平準化 前後의 所得階層別 租稅公課金負擔과 追加徵收可能額

	單位	第 1 五分位	第 2 五分位	第 3 五分位	第 4 五分位	第 5 五分位	平均 또는 合計
1974							
農家所得(戶當平均)	千圓	306.6	406.7	574.7	759.4	1,372.8	684.0
租稅公課金	圓	672	2,516	5,610	10,283	30,064	9,829
租稅公課金負擔率	%	0.22	0.62	0.93	1.35	2.19	1.44
調整租稅公課金	圓	1,878	2,893	5,642	8,990	34,292	10,739
調整租稅公課金負擔率	%	0.61	0.71	0.98	1.18	2.50	1.57
租稅公課金總額(A)	百萬圓	303.6	1,136.5	2,534.1	4,645.0	13,580.5	22,199.7
調整租稅公課金總額(B)	"	848.3	1,396.8	2,548.6	4,061.0	15,490.4	24,255.1
追加租稅公課金收入(B-A)	"	544.8	170.3	14.5	-584.1	1,909.9	2,055.4
1975							
農家所得(戶當平均)	千圓	363.1	534.7	743.6	941.4	1,670.4	850.6
租稅公課金	圓	976	3,767	7,166	12,514	47,309	14,346.4
租稅公課金負擔率	%	0.27	0.70	0.96	1.33	2.83	1.69
調整租稅公課金	圓	2,494	5,147	10,824	20,151	76,432	23,010
調整租稅公課金負擔率	%	0.69	0.96	1.46	2.14	4.53	2.71
租稅公課金總額(A)	百萬圓	445.6	1,719.9	3,271.7	5,713.4	21,599.5	32,750.1
調整租稅公課金總額(B)	"	1,138.7	2,350.0	4,941.8	9,200.2	34,896.0	52,526.7
追加租稅公課金收入(B-A)	"	693.1	630.1	1,670.1	3,486.8	13,296.5	19,776.6
1976							
農家所得(戶當平均)	千圓	473.2	710.1	963.7	1,343.9	2,206.9	1,139.6
租稅公課金	圓	3,540	7,434	11,598	21,512	59,808	20,778
租稅公課金負擔率	%	0.75	1.05	1.20	1.60	2.71	1.82
調整租稅公課金	圓	3,078	7,266	15,792	38,218	133,083	39,487
調整租稅公課金負擔率	%	0.65	1.02	1.64	2.84	6.03	3.46
租稅公課金總額(A)	百萬圓	1,592.2	3,343.6	5,216.5	9,675.6	26,900.2	46,728.1
調整租稅公課金總額(B)	"	1,384.4	3,268.1	7,102.9	17,189.5	59,857.5	88,802.4
追加租稅公課金收入(B-A)	"	-207.8	-75.5	1,886.4	7,513.9	32,957.3	42,074.3
1977							
農家所得(戶當平均)	千圓	603.8	885.8	1,173.5	1,665.8	2,951.6	1,456.1
租稅公課金	圓	7,647	10,787	13,991	30,608	105,337	33,674
租稅公課金負擔率	%	1.27	1.22	1.19	1.84	3.59	2.31
調整租稅公課金	圓	4,911	10,204	19,472	44,423	145,616	44,925
調整租稅公課金負擔率	%	0.81	1.15	1.66	2.67	4.93	3.09
租稅公課金總額(A)	百萬圓	3,343.2	4,716.0	6,116.8	13,381.6	46,052.7	73,610.3
調整租稅公課金總額(B)	"	2,147.1	4,461.1	8,513.0	19,421.7	63,662.4	98,205.1
追加租稅公課金收入(B-A)	"	-1,196.2	-254.9	2,396.3	6,039.8	17,609.7	24,594.8

〈表 17〉 租稅公課金平準化에 따른 農家可處分所得 再分配效果

	1974	1975	1976	1977
農家所得「지니」係數	0.2906	0.2841	0.2879	0.3008
現行 租稅公課金の 再分配效果				
農家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869	0.2793	0.2842	0.2958
所得再分配率(%)	1.27	1.69	1.29	1.66
調整 租稅公課金の 再分配效果				
調整農家 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868	0.2905	0.2770	0.2925
所得再分配率(%)	1.31	2.25	3.79	2.76

〈表 18〉 農業補助金の 狀況設定別 政策代案

	I	II	III	IV
米 穀	年度別 總收買量만큼 小規模 耕作農家로부터 生産 全量을 逐次 收買	補助金赤字額의 90% 를 1.5町步 미만 농가 에 歸屬시켜 耕作規模 別 귀속비율을 조정 0.5정보 미만 : 40% 0.5~1.0 : 35% 1.0~1.5 : 15% 1.5~2.0 : 6% 2.0정보 이상 : 4%	補助金赤字額의 80% 를 1.5町步 미만 농가 에 귀속시켜 경작규모 별 귀속비율을 조정 0.5정보 미만 : 35% 0.5~1.0 : 30% 1.0~1.5 : 15% 1.5~2.0 : 12% 2.0정보 이상 : 8%	狀況調整 III과 同
麥 類	年度別 總收買量만큼 小規模 耕作農家로부터 生産 全量을 逐次 收買	上 同	上 同	狀況調整 II와 同
肥 料	肥料計定의 赤字額 만 큼 實費用 價格의 1/2 價格으로 小規模 耕作 農家에게 肥料投入量 限度內에서 逐次的으로 販賣	上 同 (肥料販賣價格은 耕 地 規模別로 差等價 格化될)	上 同 (肥料販賣價格은 耕 地 規模別로 差等價 格化될)	規模의 經濟에 따른 單 位當 肥料費를 平準化 하여 이에 따라 耕作 規模別로 補助金을 귀 속 (肥料販賣價格은 耕 地 規模別로 差等價 格化될)

〈表 19〉 狀況設定에 따른 農家所得 再分配效果

	1974	1975	1976	1977
農業補助金 없을시 農家所得「지니」係數	0.3024	0.2855	0.2922	0.3067
補助金政策下의 農家所得「지니」係數	0.2906	0.2841	0.2879	0.3008
所得再分配率(%)	3.90	0.49	1.47	1.92
" (米穀)	0.96	0.39	0.14	0.20
" (麥類)	3.64	1.51	1.30	1.79
" (肥料)	-0.53	-1.40	—	0.03
狀況設定 I에서의 農家所得「지니」係數	0.2684	0.2673	0.2807	0.2886
所得再分配率(%)	11.24	6.37	3.94	5.90
" (米穀)	6.02	2.84	1.95	1.24
" (麥類)	4.20	2.17	2.05	4.27
" (肥料)	1.39	1.54	—	0.46

〈表 19〉의 계속

狀況設定 II에서의 農家所得「지니」係數	0.2712	0.2623	0.2832	0.2961
所得再分配率(%)	10.32	8.13	3.08	3.46
" (米穀)	3.77	1.51	1.27	1.08
" (麥類)	3.84	2.07	1.85	2.18
" (肥料)	3.17	4.83	—	0.10
狀況設定 III에서의 農家所得「지니」係數	0.2775	0.2665	0.2860	0.2990
所得再分配率(%)	8.23	6.65	2.12	2.51
" (米穀)	2.81	1.09	0.89	0.82
" (麥類)	3.04	1.47	1.30	1.60
" (肥料)	2.81	4.31	—	0.07
狀況設定 IV에서의 농가소득「지니」係數	0.2824	0.2776	0.2843	0.2948
所得再分配率(%)	6.61	2.77	2.70	3.88
" (米穀)	2.81	1.09	0.89	0.82
" (麥類)	3.84	2.07	1.85	2.18
" (肥料)	0.26	-0.25	—	0.91

현실적인 재분배율의 약 2.5배인 3.94%와 5.09%, 또 狀況設定IV의 경우 약 2배인 2.70%와 3.88%로 크게 改善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所得再分配效果를 增進시키는데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農業補助金の 種類가 肥料, 米穀, 麥類의 順인 것을 想起하면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3. 所得再分配의 綜合的 可能性

農業補助金 分配에 대한 4가지 狀況設定과 所得階層別 農家租稅負擔率을 勤勞者家口의 그것과 衡平을 이루도록 한 狀況設定 아래 算出된 農家所得과 可處分所得의 「지니」係數와 所得再分配率을 요약하면 〈表 20〉과 같다. 農

〈表 20〉 狀況設定에 따른 農業租稅 및 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

	1974	1975	1976	1977
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效果				
補助金 없을시 農家所得「지니」係數	0.3024	0.2855	0.2922	0.3067
補助金 없을시 農家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986	0.2805	0.2885	0.3018
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率(%)	1.26	1.75	1.27	1.60
補助金 없을시 狀況設定下의 農家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971	0.2784	0.2816	0.2984
狀況設定下 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率(%)	1.75	2.49	3.63	2.71
狀況設定下 租稅 및 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				
狀況設定 I에서의 農家 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618	0.2600	0.2698	0.2799
所得再分配率(%)	13.10	8.93	7.67	8.74
狀況設定 II에서의 農家 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656	0.2550	0.2725	0.2877
所得再分配率(%)	12.17	10.68	6.74	6.19
狀況設定 III에서의 農家 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720	0.2591	0.2752	0.2908
所得再分配率(%)	10.05	9.25	5.82	5.18
狀況設定 IV에서의 農家 可處分所得「지니」係數	0.2770	0.2705	0.2736	0.2863
所得再分配率(%)	8.40	5.25	6.37	6.65

業租稅制度的改善을 전제한 狀況設定下의 再分配效果는 年度에 따라 다르나 1974年과 1975年은 0.5%~0.7%「포인트」 정도의 再分配率 增加가 있으나 1976年과 1977年에는 각각 2.4%「포인트」와 1.1%「포인트」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農業租稅와 補助金에 대한 綜合的 狀況設定下에 1975年의 狀況設定Ⅳ에서 최소 5.25%에서 1974年의 狀況設定Ⅰ에서의 최고 13.1%의 再分配率의 達成이 가능하며 통상 7~8%의 所得再分配效果를 예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程度의 農業租稅 및 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는 어떤 意義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所得稅의 再分配效果는 擔稅率과 稅收에 대한 直接稅 또는 所得稅가 占하는 比率에 따라 그 再分配率이 다르게 나타나나 스웨덴과 같이 심한 累進稅制를 채택하지 않는 美國, 西獨, 日本 등은 5% 內外, 所得稅累進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英國은 10% 內外에 이르고 있다. 상당한 水準의 社會保障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日本에 있어서 社會保障에 의한 所得再分配率도 불과 7~9%로 나타나 있다¹⁶⁾. 이와 같이 한가지 政策手段이 갖는 再分配效果의 限界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農業租稅, 특히 農地稅가 總租稅額에서 차지하는 比率로 보아 작은 규모이지만 3% 內外의 農家所得再分配效果와, 規模가 상대적으로 작은 農業補助金으로서 3~11%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큰 政策的 效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1977年의 경우 糧穀과 肥料의 兩大計定의 赤字 656億餘원 중에서 農業租稅의 改正으로 37.5%에 달하는 246億원을 補填하고 所得再分配效果를 再分配率로서 최

소한 5% 이상 나타낸다는 것은 所得分配와 再分配를 決定하는 많은 要因中 한두 要因이 達成할 수 있는 上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Ⅴ. 要約 및 政策的 結論

農業租稅와 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규명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1974~75年間的의 4개년도를 보면 農業租稅 및 補助金의 所得再分配效果는 農家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지니」係數 所得再分配率로서 最低 1975年의 2.2%에서 最高 1974年의 5.1%, 農業所得을 기준으로 하면 그 所得再分配率은 최저 1976年의 2.8%에서 최고 1974年의 6.6%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所得再分配效果의 차이는 <表 8>과 <表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로 농업보조금의 穀種別 規模와 收買方法과 경작규모별 租稅 및 公課金負擔比率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중의 農業租稅 및 公課金의 農家所得再分配效果는 「지니」係數所得再分配率로서 1.3%에서 1.7%에 불과하여 外國의 所得稅의 所得再分配機能에서 기대되는 최소 4~5%의 所得分配率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이와 같이 低調한 農業租稅의 所得再分配機能은 農家租稅負擔率이 낮고 그 累進率이 都市勤勞者 家口 所得階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農家租稅로서 비중이 큰 農地稅의 課稅方法上 硬直性은 기초공제의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所得階層別 租稅 및 公課金負擔率을 歪曲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평균조세 및 공과금부담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所得再

16) 日本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 前掲書, p.145.

分配效果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 불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農業補助金を 세분하여 米穀, 麥類, 肥料로 구분하여 보면 所得再分配效果가 가장 큰 것이 麥類補助金으로서 1974년에 農家所得의 「지니」係數 所得再分配率 3.6%와 그 이후의 年度에 1.5% 내외에, 農業所得을 기준으로 하던 그보다도 높은 1974년의 4.3%와 나머지 年度의 1.6% 내지 2.2%에 이르고 있다. 麥類補助金보다 그 규모가 다소 작은 米穀補助金은 1974年 農家所得을 기준으로 所得再分配率이 1% 미만에서 1977년에 0.2%에 이르고 있다¹⁷⁾. 이와 같은 糧穀計定赤字의 所得再分配效果의 차이는, 첫째 麥類가 低所得 또는 小規模耕作農家を 優先하는 방법으로 收買되고 있으며 둘째로 大規模耕作農家は 米穀爲主의 農耕形態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所得再分配率이 차이가 나는 것은 低所得農家일수록 農外所得의 상대적 비율이 높음으로써 後者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소득재분배효과가 前者의 경우보다 큰 데서 기인하고 있다. 연도별로 所得再分配效果가 다소 다른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糧穀補助金の 규모가 年度마다 다르며 所得階層別 收買量이 다르기 때문이다.

肥料補助金은 農業補助金 중에서 가장 所得再分配效果가 작다고 하겠다. 肥料計定の 赤字規模가 각각 327億원과 700億원에 이르렀던 1974年과, 1975년에 農家所得을 기준으로 한 所得再分配率은 불과 0.2%와 0.9%에 불과하며 農家所得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所得再

分配가 惡化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肥料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가 미진한 것은 肥料補助金の 歸屬이 肥料使用量에 비례하여 大規模耕作農家に 그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得再分配라는 관점에서 비료계정의 黑·赤字幅이 20여억원 내외였던 1976年과 1977年の 비료보조금 운영상태가 오히려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農業租稅와 補助金은 이상과 같은 農業部門內의 所得再分配效果가 있을 뿐만 아니라 農業部門과 非農業部門 사이의 所得隔差를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 현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都市家計調査는 都市勤勞者家口에 대한 所得만을 集計·發表되고 있기 때문에 都·農間의 所得比較를 農家와 都市勤勞者家口에 限定하여 보면 1974年과 1975년에는 각각 農家可處分所得의 7.0%「포인트」와 5.7%「포인트」가 農業租稅와 補助金에 의하여 農家に 有利하게 기여되었고 그 비율이 1976年과 1977년에는 각각 1.7%「포인트」와 2.3%「포인트」로 감소되었다. 이 중에서 農業租稅에 의한 都·農間 所得隔差의 완화에 대한 기여는 극히 적은 0.2%「포인트」이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볼 때, 農業補助金の 규모가 1,000億원 이상이 되어야 農家所得의 약 5%정도밖에 증가시키지 못하고 500億원 규모로는 2% 내외의 所得差異를 완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財政인플레이의 要因으로서 작용하는 農業補助金으로써 都·農間 所得隔差의 완화를 기도하는 것은 그 政策效果가 크게 의문시 된다. 또한 所得不均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部門間의 所得隔差(intersectoral inequality)보다 部門內의 所得隔差(intrasectoral inequality)에 있으므로¹⁸⁾ 農業補助金の 政策的 效果는 後

17) 朱鶴中 編(1979), p.226 參照.

18)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1號, 韓國開發研究院, 1979, p.37 參照.

者에 대한 再分配機能이라는 관점에서 追求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國民의 租稅負擔衡平의 原則에 입각하여 農業租稅를 都市勤勞者家口の 所得階層別 租稅 및 公課金負擔率과 같은 수준으로 農業租稅制度의 改善을 進제하고 糧穀收買方法과 肥料價格 操作 등의 狀況設定(simulation)으로 農業所得再分配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974~77年間 같은 수준의 각종 보조금으로서 糧穀收買方法과 肥料價格의 差等化로서 1974年과 1975年에 각각 11%와 8%, 1976年과 1977年에 각각 4%와 6%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計算되었다. 물론 이러한 調整의 결과는 극히 이상적인 상황 아래 나타난 결과이나 보다 현실적인 狀況 아래서도 農業補助金の 所得再分配機能을, 所得再分配率의 實績値보다 2배 가량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所得階層別 都市勤勞者家口 수준으로의 農業租稅 및 公課金負擔率의 引上은 두가지의 바람직한 효과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租稅의 所得再分配效果가 1975年度 이후 현저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租稅 및 公課金の 增收可能額이 1975年에 198億원, 1976年에 421億원, 1977年에 246億원으로 推定되어 이 財源으로서 2大農特計定에서 발생하는 赤字要因의 상당한 부분을 補填할 可能性이 있다. 이와같은 현상이 狀況設定 아래 兩立한다는 것은 <表 16>에 제시된 것과 같이 低所得農家の 擔稅率이 상대적으로 高所得農家の 그것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히 1976年과 1977年에 第1五分位와 第2五分位の 農家所得階層은 이 所得階層에 相應한 都市勤勞者家口보다 租稅公課金負擔의 絕對額이 큰 반면 그 이상의

高所得農家階層은 그 絕對額이 상응한 都市勤勞者 所得階層보다 낮음으로써 農地稅課稅와 租稅負擔에 不公平性を 나타내고 있다.

上述한 農業租稅와 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의 實證的 分析和 狀況設定分析을 통하여 얻은 政策的 結論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農業租稅制度는 地方稅인 農地稅가 그 主宗을 이루고 課稅基準年을 기준한 基礎控除가 不合理하여 기준년도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都市家口와 비교한 租稅負擔率은 增加하는 경향이 있으며 租稅公課金の 所得再分配效果는 크게 阻害되고 있다. 따라서 農家에 대한 所得稅의 性格을 지니고 있는 農地稅는 명실공히 農家所得稅로서 都市家口와 같은 수준의 租稅負擔率이 되도록 매년 調整할 수 있도록 制度的 改善이 있어야 하겠다. 이리하여 1976年과 1977年에 나타난 農家租稅負擔의 逆進性을 시정하여 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하는 한편 農業補助金에 의하여 파생하는 財政赤字 要因을 부분적으로 補填할 수 있는 財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農業補助金 중에서 部門間的 所得分配 이외에는 그 寄與도가 없는 肥料計定の 赤字幅은 所得再分配라는 관점에서든 억제시켜 1976年과 1977年과 같이 收支均衡을 이루는 선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70年代初와 같은 油類波動 및 原資材波動으로 인하여 原價上昇要因을 그대로 農業部門에 轉嫁시키기 어려운 事態가 再發한다면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一時的인 肥料計定の 폭넓은 赤字를 감수하여야 될 상황 아래서는 肥料補助金の 所得再分配機能을 강화하기 위하여 肥料價格을 多元化하여 低所得農家の 補

助金歸屬을 크게 하여야 하겠다. 1974年과 1975年의 肥料補助金 규모 아래서의 肥料價格政策은 糧穀補助金の 所得再分配機能까지 蠶食 또는 中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警戒되어야 한다.

세제, 糧穀計定の 赤字는 價格支持政策을 통한 增産 및 價格安定效果를 위하여서도 불가피하나 그 赤字幅은 年間 500億원 内外에서 抑制되어야 하겠다. 현행 糧穀管理計定에서 赤字를 累積시키는 會計處理는 이 計定이 財政 인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不當하게 誇張하는 인상을 주며 더구나 1973~75年間 導入糧穀의 操作에서 기인한 1,200億원 이상의 赤字를 이 計定을 통하여 처리한 것은 不當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糧穀管理基金의 赤字는 經常移轉支出로서 다루지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은 農業租稅의 改正으로 300億원 内外의 稅收增加로써 補填한다면 200億원 안팎의 農業補助金の 支援은 赤字要因이라 하더라도 甘受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 주어진 규모의 糧穀補助金の 所得再分配效果를 提高하기 위하여서는 1977年과 같이 小規模農家가 경작하는 麥類에 대하여 收買時에 가능한 한 補助金比率을 높이고 收買方法에 있어서 보다 小規模農家에 상대적으로 收買率이 크도록 유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收買方法을 米穀收買에도 擴大適用하여 小規模農家の 收買上限은 自家消費量을 포함한 生産量으로부터 生産規模에 따라 收買遞減率을 적용함으로써 小規模農家에게 自家消費를 위한 還買量에 이르기까지 差等價格의 惠澤이 歸屬되도록 政策的인 配慮가 뒤따른다면 糧穀補助金, 특히 米穀補助金の 所得再分配機能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현행 糧穀管理計定을 통한 農業補助金の 규모나 所得再分配機能으로 보아 狀況設定 I~III와 같은 現實적으로 거의 實現可能性이 없는 制度的變更이 없이는 都農間은 물론 農業部門内部的 所得不平等度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急激한 農業補助金の 減少는 단기적으로 販賣價格의 低下와 農產物價格의 季節的變動으로 低所得農家の 상대적 所得配分率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政治的·心理的 衝擊이 보다 클 것이므로 低所得農家の 農外所得이 增大되는데 따라 점진적으로 糧穀管理計定の 赤字幅을 減少시키도록 長期的 政策이 追求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農家經濟調査와 都市家計調査資料를 이용한 分析結果는 所得稅制改善의 필요성을 暗示하여 주고 있다. 두 家計調査에 의하면 勤勞者家口の 所得稅負擔率이 비교적 높고 累進性이 있는 반면 自營業者 및 勤勞者家口와 高所得農家は <表 14> 및 <表 15>와 같이 擔稅水準이나 그 累進性이 衡平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合理稅政을 確立하기 위하여서는 稅務行政上的 技術的 問題가 뒤따른다면 勤勞者以外的 高所得階層의 租稅負擔이 租稅衡平의 原則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警戒되어야 하겠다. 또한 近間에 발표된 農地稅 基礎控除額의 대폭 引上(1980年 實施)으로 米穀收買價格에 대비한 基礎控除額이 1976年 水準에 到達하여 低所得農家に 租稅輕減을 招來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課稅標準額이나 그 稅率調整은 發表된 바 없으나 이에 대한 後續措置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農地稅의 基礎控除額과 課稅標準額의 等級은 農產物收買價格引

위에 비례하여 같이 調整하며 課稅標準額 等級과 適用稅率도 최소한 都市勤勞者 所得稅率

과 비슷한 水準이 되도록 細分化하여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_____, 『主要業務指標』.
_____, 『主要行政統計』.
農水産部, 『農家經濟調查結果報告』.
_____, 『農林統計年報』.
_____, 『糧穀管理便覽』.
內務部, 『地方稅統計』.
潘性紈, 『韓國農業의 成長』, 章文閣, 1974.
法制處, 『現行法令集』.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文八龍·柳炳瑞, 『農産物價格分析論』,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5, 1975.
日本 經濟企劃廳 總合計劃局, 『所得·資産分配의 實態와 問題點』, 1975.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1卷第1號, 1979. 3.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卷),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叢書 30, 1979.
Bahl, Roy W.,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the Korean Budget During the Modernization Process," October 1977. (mimeographed)
Bird, Richard M. and Luc Henry de Wulf, "Tax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 Latin America; A Critical Review of Empirical Studies," *IMF Staff Papers*. Vol. XX, No.3, November 1973.
Heller, Peter S., *The Incidence of Taxes in Korea*, IMF Fiscal Affairs Department, October 1978. (mimeographed)
Musgrave, R.A. and P.B. Musgrave, *Public Finance*, N.Y.: Macmillan. 1973.
Pechman, J.A. and B.A.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Schultze, Charles L., *The Distribution of Farm Subsidies: Who Gets the Benefits*,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1.
Wulf, Luc Henry de, "Fiscal Incidence Studies in Developing Countries: Survey and Critique," *IMF Staff Paper*, Vol. XXII, No.1, March 1975.